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1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(2025. 2. 12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김경화 상하수도행정과장)

가. 개정사유

○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 예고 통지 방식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 통지 규정 신설(안 제43조제2항)

- 체납자에게 단수 조치 전에 통지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안전한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함.

다. 관련법령

○「수도법」제38조(공급규정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 예고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통지 방식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종합검토 결과

- ‘국민권익위원회’에서는 수도요금 체납예고 시 체납자의 주소, 체납기간,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예고장을 스티커형 또는 기타 형태로 제작하여 현관문, 우편함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,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방식 등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, 이메일, 등 대체방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.

- 특히, 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와 함께 살고 있는 체납자의 가족 또한 체납자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됨

-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,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